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안내문

▣ 특별공급 신청일정

구분	일자		시간	장소
신청일시	해당지역 (대전광역시 거주자)	기타지역 (세종시, 충청남도 거주자)	10:00~16:00	당사 견본주택
	8월 1일(화)			
당첨자 선정	8월 2일(수)		14:00	당사 견본주택 계재
동·호수 발표	8월 10일(목)		금융결제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

* 당첨자 선정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연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요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07.27)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유주택으로 처리됨.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동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지역별 예치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및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자

▣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견본주택 비치)
	인감증명서 (주택공급 신청용)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해당자	청약통장순위 (가입) 확인서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 (가입) 확인서 발급)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리인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신청인 인감증명서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위 필요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해당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상기 내용은 참고용이며, 더 정확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람.